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에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법령해석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8. ~ 2. 13.)

대통령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정부 내 법령(민사·상사·형사, 행정소송,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)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

14. 규제혁신·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

제4장(제18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6”을 “23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5”를 “23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20”을 “221”로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법제지원국) ①·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법제지원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정부 내 법령(민사·상사·형사, 행정소송,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)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</u> 14. <u>규제혁신·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</u>
<u>제4장 한시조직</u>	<u><삭제></u>
제18조(법령의견제시과) ① <u>법제처 법령해석국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령의견제시과를 둔다.</u> ② <u>법령의견제시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</u>	<u><삭제></u>

다.

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부 내 법령(민사·상사·

형사, 행정소송,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조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

2. 규제혁신·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·지원

3. 신기술·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·지원

4.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 입법의 발굴·연구 등 관련 업무

④ 법령의견제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

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6</u>	<u>23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35</u>	<u>236</u>	+1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20</u>	<u>221</u>	+1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